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사항

▶ [대통령령 제26740호]

○ 개정일자 : 2015. 12. 22

○ 시행일자 : 2015. 12. 23

## ◇ 개정이유

가축의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고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마련

(제33조제4항 및 별표 1 신설)

시·도가축방역기관에 대하여 췌소 결핵병의 경우에는 건당 소요시간을 20분으로 정하고 1

일 24건을 기준 업무량으로 정하는 등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1인당 1일 적정 업무량을 정하고, 소·돼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수가 300호 미만인 경우 1명, 1,200호 이상인 경우 3명을 적정인원으로 하여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등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을 마련함.

### 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제6조 및 제7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제11조제1항 및 별표 2)

1)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등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감액 기준을 추가함.

- 2)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 감액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의 감액 기준 마련(제1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살

처분을 1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국가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제16조 및 별표 3)**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주요 개정내용(조항)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가. ~다. (생략)
  -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평가액의 100분의 80(폐기 사료 등)
-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가. ~ 카. (생략)
  - 타.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 1) 2회 발생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 3회 발생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3) 4회 발생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 100만원 / 2회 위반 : 200만원 / 3회 위반 : 500만원
- 나. ~ 라. (생략)
- 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 200만원 / 2회 위반 : 400만원 / 3회 위반 : 1,000만원